#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5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구자근

이성권 • 박충권 • 권영진

이달희 • 권성동 • 이종배

김선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 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 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로,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을 "제29조제2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를 "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 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 ④ (생 략)	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5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	
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	(제38조제2항에 따라
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	
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	
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u>제29</u>
기관의 장, 차관( <u>제29</u> 조제 <u>2항</u> ·	조제2항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 <u>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u>	
<u>정안전부</u>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	
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	
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u>
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	
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	
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 ⑩ (생 략) 제26조(행정각부) ① (생 략)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③ (생략)
-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생 전략)
  -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 다.
  - ④ ~ ⑧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②
의교부 <u>·</u>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3 (현행과 같음)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u> </u>

④ ~ ⑧ (현행과 같음)